

직권 조치 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6년 06월 02일

정남면장 인 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유 *록	유 *록 1947-03-11	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정남면 덕절창말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6-06-02